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6월 28일

○ 회부일자 : 1993년 6월 28일

3. 제 안 이 유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를 충청북도 제증명수수료와 동일 금액으로 조정하여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4. 주 요 곳 자

○ 제증명수수료 조정

구 분	현 행	개 정
제 증 명 수 수 료	200원	300원

○ 공공단체가 공무상 신청하는 제증명 발급에는 수수료 감면 사실확인 고루인을 납입하도록 함.

5. 검 토 의 견

현행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를 매 1건마다 200원씩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3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조례의 字句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는 1979. 7. 1자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개정된 후 지금까지 동일 금액을 징수하고 있어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고, 충청북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料率중 회계에 관한 증명, 기타시설 公簿 등에 의한 증명 등은 300원씩 징수도록 되어

있어 관공서의 제증명수수료와 균형을 유지하여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도민에게 경제부담을 주는 조례를 타 시 . 도(서울시, 전남 제외) 보
다 조기에 개정하고, 한편 제출된 조례안의 개정이유와는 달리 충청북
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는 신원에 관한 증명수수료가 충청북도
조례 제 1421호(1985. 3. 29)로 삭제되어 징수하지 않고 있어 형평유
지의 문제에 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첨